

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일 : 2023. 5. 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본교에서 수학하는 자를 말한다.
2.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이하 '학위과정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에는 비학위과정생을 포함한다.
3. "교환학생"이라 함은 자매교류협정에 의거하여 방문수학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4. "어학연수생"이라 함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교내 어학연수 기관 등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제 3조(주관부서) ① 외국인 유학생 지원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학부과정 및 일반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
 2. 특수(또는 전문)대학원과정 외국인 유학생: 각 대학원 행정실
 3. 교환학생: 국제처 국제교류팀(다만, 단과대학 자체 초청 교환학생은 해당 단과대학의 행정실)
 4. 어학연수생: 제2조 제4호의 어학연수생이 수학하는 기관의 행정실
- ② 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항을 국제처장에게 상시 통보하고, 국제처장은 각 부서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의 협의 및 조율을 위하여 주관부서 간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외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학사관리 담당부서) ①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학부과정 외국인 유학생: 각 단과대학 행정실(다만,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학사관리는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2. 대학원과정 외국인 유학생: 각 대학원 행정실
 3. 교환학생: 국제처 국제교류팀 및 각 단과대학 행정실(단과대학 자체 초청 교환학생)
 4. 어학연수생: 제2조 제4호의 어학연수생이 수학하는 기관의 행정실
- ② 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대학생활 및 체류관리를 지원한다.
- ③ 외국인 유학생이 수업에 연속 2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은 자체없이 수업 개설 부서로 통보하고, 수업 개설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단과대학 행정실은 소속 학부과정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일반대학원 행정실은 소속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체류관리) ①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

- ②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부서는 체류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국제처 글로벌교육지원팀으로부터 외국인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접속 권한을 부여받도록 한다.
- ④ 체류관리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 외국인학생의 학적변동 신고 및 학적사항을 제5조 1항의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 6조(보험가입) 외국인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본인이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7조(기숙사) ①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소정 기간에 각 캠퍼스별로 운영하는 외국인 학생 거주 가능 기숙사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에 입주 시 해당 기숙사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보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학적변동 신고 미이행 및 학적사항 입력 미흡, 통계자료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는 해당부서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